

『오주연문장전산고』 祀典의 건축 관련부분 해석과 연구

A Study on the Texts Related to Ancestral Ritual Building in 『Ohju Yeonmun Jangjeon Sango』

백 소 훈*

Baik, So-Hun

(중국 清華大學 건축의 역사와 이론 박사과정)

Abstract

『Ohju Yeonmun Jangjeon Sango』 written by Lee, Gyu-gye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ncyclopedias in the period of Chosun-Dynasty. There are two chapters related to architecture in this book, one is 「ancestral rite·governance·human」 chapter, and the other is 「architecture·human」 chapter. Both of them are hard to understand because they are written in ancient Chinese and consist of various quotations in ambiguous way. This paper as a partial study is deal with the former. It makes difference between writer's original texts and quotations through textual research, and translates to modern Korean, and analyze information about ancient architecture in texts. The texts can divide to three sections. The first introduces three Chinese architectural theory books as 『Gogonggi(考工記)』, 『Yeongjo Beopsik(營造法式)』 and 『Mokgyeng(木經)』, and mentions about the prototype of the royal ancestral ritual building in 『Gogonggi Toju(考工記圖注)』. The second quotes 『Seoyeong(書影)』 to introduce 『Yeongjo Beopsik』. The third quotes 『PaePyeon(稗編)』 to introduce 『Yeongjo Beopsik』 and 『Mokgyeng』, and mentions about the counting unit of columns of the royal ancestral ritual building. Although the purpose for these quotations is not directly mentioned, but we can find it is intended to explain the architectural prototype and lay-out of the royal ancestral ritual building.

주제어 : 오주연문장전산고, 사전, 건축, 이규경

Keywords: Ohju Yeonmun Jangjeon Sango, Ancestral rite, Architecture, Lee Gyu-gyeng

1. 서 론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는 조선시대 이규경(李圭景)¹⁾이 쓴 백과사전류 총서로서 내용 가운데 상당한 분량의 건축 관련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규경의 조부 이덕무(李德懋)와 부친 이광규(李光葵)는 모두 규장각 검서(檢書) 관직을 지냈는데 이는 규장각에 소장된 각종 서적의 교정과 서사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이들의 영향으로 이규경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서적들을 두루 접하였다.

“오주연문(五洲衍文)”이란 세계 각국의 무수히 많은 서적들이라는 뜻이고 “장전(長箋)”이란 여러 설을 모아 놓고 논변과 판단을 더해 해석하는 글을 가리킨다. 즉

이 책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서적들을 읽는 과정에서 발견한 명물도수(名物度數)²⁾에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발췌해 두었다가 주제별로 이들을 묶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논변을 더하여 집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고(散稿)”라 하는 까닭은 오랫동안 틈틈이 쓴 글들을 모아서 엮었기 때문이다.

2. 『오주연문장전산고』 중 건축 관련부분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건축 관련 부분은 크게 두 곳에서 발견된다. 첫째는 「인사편·치도류·사전(人事篇·治道類·祀典)」부분으로 “사전(祀典)” 즉 제사와 관련된

* Corresponding Author : baeksohun@hanmail.net

1) 이규경(1799-1863): 조선 후기 학자.

2) 명물도수(名物度數)란 명목, 사물, 법식, 수량을 가리킨다. 『오주연문장전산고』 서문에서 이 책이 명물도수에 관련된 학문을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건축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둘째는 「인사편·궁실류(人事篇·宮室類)」 부분으로 “궁실(宮室)”³⁾ 즉 일반건축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논하고 있다.

Tab.1 Architecture relevant parts in 『Ohju Yeonmun Jangjeon Sango』

chapter(篇)	class(類)	article(條)
human (人事篇)	governance (治道類)	ancestral rite (祀典)
	architecture (宮室類)	architecture (宮室)
		roof tile and brick (甃瓦)
article(條)	clause(目)	about
architecture (宮室)	architectural system (宮室制度)	general theories for architecture
	repairing old houses (修理廢宅)	how to repair old houses
	floor heating and oven (溫突, 土炕)	advanced systems for floor heating and oven
	MyengDang (明堂)	MyengDang, the ancient ritual building
	horse barrier, sundial table, kitchen (行馬, 時辰臺, 廚閣)	the origins of three unique architectural parts
	pavilion and hall (亭亭亭, 堂堂堂)	the meaning of pavilion and hall
	landscape management (活畫觀)	the ideal environment around houses
roof tile and brick (甃瓦)	making bricks (燔甃)	how to make bricks in China
	making roof tiles (華東瓦類)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roof tiles
	ChiMi roof ornament (鷗尾)	a story about roof ornament

「인사편·궁실류(人事篇·宮室類)」는 다시 “궁실”과 “벽와(甃瓦)”라는 두 개의 조(條)로 나뉜다. “궁실조”와 “벽와조”는 각각 다시 몇 개의 목(目)으로 나뉘는데 각 목의 끝에는 “변증설(辨證說)”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변증설이란 분석[辨], 고증[證], 가설[說]을 가리키는데, 이규경은 각 목의 주제에 대해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를 분석 및 고증하여 논리적인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궁실조는 다시 “궁실제도 변증설(宮室制度辨證說)”, “수리폐택 변증설(修理廢宅辨證說)”, “온돌토항 변증설(溫突土炕辨證說)”, “명당 변증설(明堂辨證說)”, “행마시

진대주각 변증설(行馬時辰臺廚閣辨證說)”, “정정정당당 변증설(亭亭亭堂堂辨證說)”, “활화관 변증설(活畫觀辨證說)”로 나뉜다.

궁실제도 변증설에서는 일반적인 건축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수리폐택 변증설에서는 폐가를 수리하여 재사용 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온돌토항 변증설에서는 온돌과 아궁이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명당 변증설은 주나라 문공이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이상적 건축인 명당(明堂)에 대해 설명하며, 행마시진대주각 변증설에서는 행마(行馬), 시진대(時辰臺), 주각(廚閣) 등의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정정정당당 변증설에서는 정(亭), 당(堂), 재(齋), 와(窩), 헌(軒)등 건물의 편액명칭에 쓰이는 건물의 유형을 가리키는 글자들에 대해 고증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그 중 정(亭)과 당(堂)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활화관 변증설에서 활화(活畫)란 살아있는 그림 즉 천지자연의 가리키는데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의 오묘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굳이 궁실조에 포함시킨 이유는 문인들이 주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환경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벽와조는 다시 “번백 변증설(燔甃辨證說)”, “화동와류 변증설(華東瓦類辨證說)”, “치미 변증설(鷗尾辨證說)”로 나뉜다. 번백 변증설에서는 중국의 벽돌 제작법에 대해 설명하고, 화동와류 변증설에서는 중국과 조선의 기와를 비교 설명하며, 치미 변증설에서는 치미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건축에 대한 일반이론을 다루는 것은 바로 “궁실제도 변증설”목으로 내용에 따라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건축 영조이론인 『고공기』, 『영조법식』, 『목경』을 소개하였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건물의 기초공법과 접합재료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세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 일본, 유구, 서양의 건축특징과 기타 특이한 건축사례를 소개하였고, 네 번째 부분에서는 길과 다리의 건설제도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역대 건축 명장, 건축부재 명칭, 대문에 쓰는 벽사문의 유래 등 건축 관련 잡식을 모아 소개하였다.

본 논문은 『오주연문장전산고』 중 건축 관련부분들에 대한 종합 연구의 하부 연구로서, 「인사편·치도류·사전」의 건축 관련부분에 대해 번역과 분석을 실시한다.

「인사편·치도류·사전」의 건축 관련부분의 문장은 선후논리 없이 단순 열거된 부분이 많고 인용문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원문에 대해 문장부호와 주해를 덧붙

3) 여기서 “궁실”은 궁전이나 주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을 두루 가리킨다.

붙여 문장의 구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장 속에서 인용되거나 소개된 각종 서적들의 원문을 찾아 이규경의 문장 중 어느 부분이 인용문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번역시에는 이규경이 이 글에서 의도하는 바를 유추하여 적절히 문맥을 재구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인용문의 출처는 인용문의 최초 출처까지 추적하여 인용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3. 「인사편·치도류·사전(人事篇·治道類·祀典)」의 건축 관련부분

먼저 「인사편·치도류·사전」의 건축 관련부분의 원문과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원문은 한국 고전 종합 DB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⁴⁾

凡百工之具，皆有法式，然後可以摸象其制矣。『考工記』爲古今營造法制，洵爲不祧之典，而語多佶偃聱牙，其所稱名物度數，尤非易解。而況我東則於此尤昧昧，束皮高閣而已矣。愚於此每竊歎之，最晚見李誠之『營造法式』之標題，沈括『木經』之書目，益有憾於未見全書矣。自茲以往，強求之不已，得清之戴震『考工記補注』，不覺觀止之歎，然未暇購作我書，但鈔其「宗廟圖說」，一則庸備讀『禮』時參考之資。

못 공예품은 모두 법식이 있으니 후에 그 제도를 모방할 수 있다. 『고공기』는 고금의 영조법제로 실로 부동의 고전이나 말이 꼬여있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그 기물의 명칭과 치수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하물며 우리 동방의 나라는 이에 특히 어두워 책장 높은 곳에 넣어둘 뿐이니 내가 이에 탄식 하였다. 가장 늦게 이계의 『영조법식』과 심괄의 『목경』의 제목을 보았으나 온전한 책을 보지 못하여 안타까워 그 후로 간절히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청나라 대진의 『고공기 보주』⁵⁾를 접하여 지극한 찬탄을 금치 못하였는데 여유가 없어 살 수 없었으나 그 「종묘도설」⁶⁾을 베껴 한편으로 『예기』를 읽을 때 참고자료로 쓰도록 준비하였다.

4) 한국고전종합DB의 원문에는 이미 오탈자 교정과 기본적인 주석 작업이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류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5) 여기서 청대 대진(戴震)(1724-1777)이 썼다는 『고공기 보주(考工記補注)』는 오기이며 올바른 서명은 『고공기 도(考工記圖)』 혹은 『고공기 도주(考工記圖注)』이다. 대진은 이 책을 『고공기 도(考工記圖)』라 명명하였으나 그림에 주석이 붙어있기 때문에 후인들은 『고공기 도주(考工記圖注)』라 불렀다. 청대 장상남(蔣湘南)(1795-1854)이 쓴 『고공기 고증보주(考工記考証補注)』라는 책도 있으나 장상남의 출생년도가 이규경 사후임을 감안할 때 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고공기 도주』에 「종묘도설」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 『고공기』에는 원래 종묘건축에 대한 묘사가 없다. 이 「종묘도설」은 『상서(尙書)』의 “고명(顧命)”편에 나오는 천자의 노침(路寢) 제도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대진이 자의로 『고공기 도주』에 첨부했을 따름이다.

周亮工『因樹屋書影』：宋人李誠之有『營造法式』三十四卷，皆徽廟宮室制度，聞海虞毛子晉家有此書，凡六冊，式皆有圖，款識高妙，界畫⁷⁾精工。

주량공의 『인수옥서영』에 의하면 송나라 사람 이성의 『영조법식』 34권이 있는데, 모두 송 휘종 때 궁실제도에 관한 것으로 듣기로 해오⁸⁾지방 모자진⁹⁾의 집에 이 책이 있는데 서적은 총 6책으로 법식마다 모두 그림이 있고 서체의 수준이 높고 그림이 정교하다고 한다.

『裨編』：『營造法式』李誠所著，其略曰：僖宗還議立太廟，盈孫議曰“故廟十一室，二十三楹，楹十一梁，垣墉廣袤稱之。”『禮記』：兩楹知爲兩柱之間矣。然楹者柱也。自其奠廟之所而言，兩楹則間於廟兩柱之中。于義易曉，後人記屋室，以若干楹言之，其將通數一柱爲一楹耶，抑以柱之一列爲一楹，此無辨者。據盈孫此議，則以柱一列爲一楹也。又按沈括有『木經』，即營舍之法也，或云喻皓所撰，其書爲三卷。

『패편』에 의하면 『영조법식』은 이계가 지었다고 한다. 또 (『영조법식』에)대략적으로 이르기 『왕영손전』에 의하면 당나라 희종이 환도를 하고 태묘를 세우는 일을 논하자 영손이 의견을 내어 이르기 “옛 태묘는 11실(室) 23영(楹)이고, 1영은 11량(梁)이며, 담과 벽은 너비와 깊이가 그에 어울렸습니다”라 하였다. 『예기』에 의하면 두 영(楹)은 두 기둥(柱)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왕영손은) 영을 곧 기둥이라 하였다. 그 묘(廟)를 모시는 곳으로 말하자면 두 영은 묘의 두 기둥 사이에 있는데, 뜻을 알기 쉽게 하기위해 후인들이 건물에 대해 기록할 때 영의 수로 말하며 그 1주를 1영으로 셈하였고 혹은 기둥 1열을 1영이라 하여 이를 구별하지 않은 것이다. 영손의 이 의견에 의하면 기둥 1열이 1영이다. 또 의하면 심괄의 『목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즉 집을 만드는 법이다.¹⁰⁾ 혹은 이르기를 유호가 지었다고 하는데 그 책은 3권이라고 한다.

책의 서문을 보면 이규경은 장기간 틈틈이 발췌해둔 내용들을 모았기 때문에 “산고(散稿)”라 이름 하였다고 했는데, 특히 이 부분은 문장구성과 내용에서 보았을 때 탈고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문장부호를 더하기 전의 원문을 보면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는 이규경이 상호 연관성이 없는 몇 개의 인용문을 별다른 해설 없이 단순나열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용문인지

7) 중국 고대회화 가운데서 건축을 주제로 하는 그림은 자를 이용해 선을 긋기 때문에 “계화(界畫)”라 부른다.

8) 오늘날 중국 강소성 상숙시에 해당한다. 장강에 연한 수운의 요지이다. 대략 소주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9) 명대 말기의 유명한 서적 수집가. “급고각(汲古閣)”이라 불렀던 그의 장서각은 명나라 최대의 개인 서가로서 역대 최대의 장서량을 자랑하였으며 다수의 희귀본을 재출판하여 당시 학계에 명성이 높았다.

10) 오류이다. 심괄은 송나라 문인으로 『몽계필담(夢溪筆談)』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는 심괄이 보고 들은 각종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 유호의 『목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문단은 비교적 논리적으로 문장을 완성하고 있으나, 2문단과 3문단은 『인수옥서영(因樹屋書影)』과 『패편(稗編)』에 소개된 『영조법식(營造法式)』과 『목경(木經)』의 내용을 단순 발췌하는데 그쳤고, 나아가 이들 건축 관련 고서적들이 제목인 “사전(祀典)” 즉 제사의례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Tab.2 Subjects and sources of each section in 「ancestral rite·governance·human」 chapter

section	subject	source
1	Three architectural design theory books as 『GoGongGi(考工記)』, 『YeongJoBeobSik(營造法式)』 and 『MokGyeng(木經)』	
2	Introduction for 『YeongJoBeobSik』	『SeoYeong(書影)』
3	Introduction for 『YeongJoBeobSik』 and 『MokGyeng』	『PaePyeon(稗編)』

source	original source	
the section about architecture in 『PaePyeon』	about 『YeongJoBeobSik』	『SinTangSeo(新唐書)』 『YeGi(禮記)』
	about 『MokGyeng』	『MongGyePilDam(夢溪筆談)』

원문은 크게 3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1문단은 건축제도와 관련된 대표적 고문헌으로써 춘추전국시기의 『고공기(考工記)』, 송대 『영조법식』 그리고 송대 『목경』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2문단과 3문단은 세 책 가운데서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고공기』를 제외하고 비교적 생소한 『영조법식』과 『목경』이라는 두 책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문단은 청대 주량공(周亮工)의 『인수옥서영』을 인용하여 『영조법식』을 간략히 소개 하였고, 3문단은 명대 당순지(唐順之)의 『패편』을 인용하여 『영조법식』과 『목경』을 소개 하였다.

여기에 『영조법식』과 『목경』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이규경이 이 두 책의 원문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목경』은 일부 송대 문헌에 약간의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제외하고 일찍이 실전되었다. 또 『영조법식』은 당시 극소수 소장자들만 소장하고 있던 희귀본으로 심지어 조선 정조 때 청나라로부터 구매한 『고금도서집성』¹¹⁾에도 수록되지 않았

다. 『영조법식』은 얼마 후 건륭황제의 명으로 『사고전서』에 포함되어 출간되었으나 『사고전서』는 총 7부만이 제작되어 열람과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조선에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규경은 사실상 『영조법식』의 원문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었다.

2문단의 첫머리 “周亮工因樹屋書影”은 청나라 주량공이(周亮工) 집필한 『서영(書影)』이라는 책을 가리킨다. “수옥(樹屋)”은 감옥의 은유적 표현으로 옥중에서 집필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수옥 서영(因樹屋書影)』이라고 불렸다. 『서영』의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近人著述, 凡博古, 賞監, 飲食, 器具之類皆有成, 害獨無言及營造者. 宋人李誠之有『營造法式』卅卷, 皆徹廟宮室制度, 如良岳華陽諸宮法式也. 聞海虞毛子晋家有此書, 凡六冊, 式皆有圖, 款識高妙, 界畫精工, 竟有劉松年等筆法, 字畫亦得歐, 虞之體, 紙板黑白之分明, 近世所不能及. 子晋翻刻宋人秘本甚多, 惜不使此書一流布也.

근래의 저술에는 무릇 박고, 감상, 음식, 기구류 등이 모두 성취가 있는데 어찌 오직 건축을 언급한 것이 없다. 송나라 사람 이성의 『영조법식』 30권이 있는데 모두 송 휘종 때 궁실제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간악 화양궁¹²⁾ 등의 법식이다. 듣기로 해오지방 모자진의 집에 이 책이 있는데 총 6책이며 법식마다 그림이 있고 서체가 뛰어나며 그림이 정교하고 놀랍게도 유송년¹³⁾의 필법이 있고 글자와 그림이 구양수와 우세남의 서체가 있으며 인쇄가 흑백이 분명한 것이 근세에 따를 수가 없다고 한다. 모자진이 송대 희귀본을 새롭게 인쇄한 것이 매우 많은데 아쉽게도 이 책만큼은 공포하여 퍼뜨리지 않았다.

짧은 글씨 부분이 바로 이규경이 2문단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서영』에서는 『영조법식』이 “30권(卅卷)”이라 하였는데 이규경은 여기에서 “34권(三十四卷)”이라 하였고 다시 뒤에 나오는 「궁실제도 변증설」에서는 “30권(三十卷)”이라 썼다. 이규경의 실수인지 현존하는 판본의 문제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참고로 실제 『영조법식』은 총 3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庫全書)를 제외하고 가장 완벽한 총서로 명성이 높았다. 조선왕실은 정조 때 원래 『사고전서』를 구입하려 했으나 『사고전서』는 당시 청나라에서도 막 한 벌만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신 『고금도서집성』을 구입하였다.

12) 북송의 수도인 변경에 있었던 황가원림. 강남지방에서 수로로 운반해온 기암괴석을 쌓아 만든 간악(良岳)이라는 가산을 중심으로 방대한 건축군을 조성하고 이름을 화양궁(華陽宮)이라 하였다.

13) 북송시기의 유명 화가. 그의 작품들을 보면 건축에 대한 묘사가 많고 뛰어나다.

14) 도번 『영조법식』은 총 36권이냐 그 중 2권은 새롭게 추가한

11) 『고금도서집성』은 청나라 강희제의 명으로 고금의 각 종 서적을 집대성하여 정리한 총서로서 1725년에 완성 되었으며, 그 후 1781년 청나라 건륭황제의 명으로 막 초벌이 완성된 『사고전서(四

한편 이 문장에는 명대 모자진이 소장하였던 『영조법식』 판본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서영』의 묘사에서 글체와 그림을 당·송대 명인들의 솜씨에 비유하였고 모자진의 집에 송대 초사본이 많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명대 모자진이 소장하고 있던 『영조법식』은 송대 판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문단 첫머리의 “稗編”은 명나라 당순지(唐順之)가 쓴 『패편(稗編)』이라는 총서를 가리킨다. 이규경은 당순지를 당나라 때의 성명이 순지인 사람으로 착각하였다. 뒤에 나오는 「궁실제도 변증설」 목을 보면 “唐之順之”라고 썼는데 앞에서 『고궁기 도주』의 집필자인 청나라의 대진을 “淸之戴震”이라고 쓴 점에서 볼 때 이규경이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 다만 『패편』에서 이규경이 인용한 문장을 보면 송나라 때의 이야기를 적고 있기 때문에 시간선후 관계상 『패편』의 저자가 당나라 때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었겠지만, 방대한 독서과정에서 이규경이 이에 대해 미처 깊게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돌아가자. 3문단은 “그 대략을 이르자면(其略曰)”이라 하였듯이 『패편』의 내용을 대략 발췌하였기 때문에 문장의 선후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인용관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패편』의 원문을 보지 않고서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청 건륭시기 『사고전서』에 수록된 판본을 기준으로 『패편』의 관련 원문을 살펴보자. 이 책에는 고대 건축제도와 관련하여 “영조법식(營造法式) 이계(李誠)”와 “목경(木經) 심괄(沈括)”이라는 두 소재목 하에 다음과 같은 짝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營造法式』 李誠

……屋楹數。『王盈孫傳』：僖宗還議立太廟，盈孫議曰“故廟十一室，二十三楹，楹十一梁，垣墉廣袤稱之。”『禮記』：兩楹知爲兩柱之間矣。然楹者柱也。自其奠廟之所而言，兩楹則間于廟兩柱之中。于義易曉，後人記屋室，以若干楹言之，其將通數一柱爲一楹耶，抑以柱之一列爲一楹也。此無辨者，據盈孫此議，則以柱之一列爲一楹也。

『영조법식』 이계.

……건물의 영(楹)의 수에 관하여. 『왕영손전』 15)에 의하면 송나라 희종이 태묘를 세우는 일을 논하자 영손이 의견을 내어 이르기를 “옛 태묘는 11실(室) 23영

(楹)이고, 1영은 11량(梁)이며, 담과 벽은 너비와 깊이가 그에 어울렸습니다.”라 하였다. 『예기』에 의하면 두 영(楹)은 두 기둥(柱) 사이라 알려져 있는데 영이란 바로 기둥이다. 그 묘(廟)를 모시는 곳으로 말하자면 두 영은 묘의 두 기둥 사이에 있는데, 뜻을 알기 쉽게 하기위해 후인들이 건물에 대해 기록할 때 영의 수로 말하며 그 1주를 1영으로 셈하였고 혹은 기둥 1열을 1영이라 하여 이를 구별하지 않은 것이다. 영손의 이 의견에 의하면 기둥 1열이 1영이다.

『木經』 沈括

營舍之法. 謂之『木經』. 或云喻皓所撰. 凡屋有三分, 自梁以上爲上分, 地以上爲中分, 階爲下分. 凡梁長幾何, 則配極幾何, 以爲椽等. 如梁長八尺, 配極三尺五寸之類, 則廳堂法也. 此謂之上分. 楹若干尺, 則配堂基若干尺, 以爲椽等. 若楹一丈一尺, 則階基四尺五寸之類, 以至承拱, 椽, 桷, 皆有定法, 謂之中分. 階級有峻, 平, 慢三等. 宮中則以御輦爲法, 凡自下而登, 前竿垂盡臂, 後竿展盡臂, 去聲爲峻道. 前竿平肘, 後竿平肩, 爲慢道. 前竿垂手, 後竿平肩, 爲平道, 此之爲下分. 其書三卷. 近歲土木之工益爲嚴善, 舊『木經』多不用, 未有人重爲之, 亦良工之一業也.

『목경』 심괄.

집을 짓는 법이다. 이르기를 『목경』이라 하는데 유희가 지었다고 하기도 한다. 무릇 건물은 3분 하는데, 들보 위가 상분이고, 바닥 위가 중분이고, 기단은 하분이다. (상분에 대해) 무릇 들보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 꼭대기 높이가 얼마인지를 맞추어 서까래 등을 올린다. 만약 들보의 길이가 8척이면 꼭대기는 3척5촌으로 맞추니 바로 청당의 법식이다. 이를 이르러 상분이라 한다. (중분에 대해) 기둥 높이가 몇 척이면 곧 청당 기단의 높이를 몇 척으로 맞추고 서까래 등을 올린다. 만약 기둥 높이가 1장1척이면 기단 높이는 4척5촌 정도이다. 두공, 서까래, 부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해진 법식이 있으니 이르러 중분이라 한다. (하분에 대해) 계단은 험하고(峻) 평평하고(平) 완만한(慢) 3등급으로 나뉜다. 궁전에는 어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무릇 아래에서 올라갈 때 앞 가마꾼의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뒷 가마꾼이 팔을 올려 끝까지 퍼는 경우를 준도(峻道)라고 하고 4성 중 거성으로 받음한다. 앞 가마꾼이 팔꿈치와 평행하게 하고 뒷 가마꾼이 어깨와 평행하게 하는 경우는 만도(慢道)라고 한다. 앞 가마꾼이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뒷 가마꾼이 어깨에 평행하게 하는 경우를 평도(平道)라고 한다. 이를 하분이라 한다. 그 책은 3권으로 근세 토목의 공사는 더욱 엄격하니 옛 『목경』은 쓰임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역시 훌륭한 공장의 업적이다.

굵은 글씨 부분이 바로 이규경이 발췌한 부분이다. 3문단의 대부분이 바로 이 두 글의 직접인용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영조법식 이계”부분은 자세히 발췌하였고 “목경 심괄”부분은 최소한의 서지정보만 발췌하였는데,

부록이고 실제 원본은 34권이다. 일부 고문헌에서는 『영조법식』의 권수를 30권 혹은 36권이라고 기록한 경우도 있다. 이는 해당 문헌의 오기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판본의 권수일 수도 있다.

15) 『신당서(新唐書)』 164권, 원전 제89

이는 이규경의 관심이 전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규경이 자세히 발췌한 부분은 북송시기 『영조법식』에 수록된 “옥영수(屋楹數)” 즉 건축규모를 나타내는 단위인 “영(楹)”에 관한 고증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흥미롭게도 청대 말기에 남아 있었던 모든 판본의 『영조법식』에서 발견할 수 없는데, 『패편』이 당시 풍문을 근거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명대에는 아직 남아있던 『영조법식』 송대 판본¹⁶⁾을 근거로 기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중국에서는 1925년 출판된 도본(陶本)¹⁷⁾ 『영조법식』에서 『패편』의 옥영수 부분을 비로소 부록으로 첨가하였다.

한편 『인수옥서영』과 『패편』은 각각 『영조법식』의 저자를 이계(李誠)와 이성(李誠)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규경은 뒤의 「궁실제도 변증설」에서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唐順之『稗編』:『營造法式』李誠所著. 『因樹屋書影』宋人李誠之. 或李誠之字誠之歟.

명나라 당순지의 『패편』에 의하면 『영조법식』은 이계(李誠)가 썼다고 하나 『인수옥서영』에 의하면 이성(李誠)이 썼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계의 자(字)가 성(誠)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중국 건축역사 학계에서는 후인들이 책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계(誠)”자와 “성(誠)”자 사이에 혼동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영조법식』의 저자가 이계인지 이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 중 이계의 자는 증명(仲明)이고 도본(陶本) 『영조법식』에서도 표지에 “이명중 영조법식 36권(李明仲營造法式三十六卷)”¹⁸⁾이라고 적고 있다.

한편 원문 중에 “『예기』에 의하면 두 영은 두 기둥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라는 구절은 사실 이규경이 『예기』 원문을 보고 유추해낸 것이 아니라 청나라 대

진이 쓴 『고궁기 도주』의 「종묘도설」을 보고 깨달은 것일 확률이 크다. 이는 『예기』에 영(楹)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다는 점과 1문단의 “『고궁기』는 고급의 영조법제로 실로 부동의 고전이나 말이 꼬여있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그 기물의 명칭과 치수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청나라 대신의 『고궁기 보주』를 접하여……그 「종묘도설」을 베껴 한편으로 『예기』를 읽을 때 참고자료로 쓰도록 준비하였다”라는 구절에서 추측 가능하다.

다음으로 인용관계를 고찰해 보자. 『패편』의 “영조법식 이계” 부분에서 인용한 「왕영손전」의 원 출처는 『신당서(新唐書)』인데, 이를 다시 『구당서(舊唐書)』와 비교해 보면 내용이 다르다. 『구당서』의 「왕영손전」의 해당 원문은 아래와 같다.

太廟制度. 歷代參詳, 皆符典經, 難議損益. 謹按舊制, 十一室, 二十三間, 十一架, 垣墉廣袤之度, 堂室淺深之規, 階陞等級之差, 棟宇崇低之則, 前古所謂奢不能侈, 儉不能逾者也.¹⁹⁾

태묘의 제도에 대해 역대 사례를 고증해 보면 모두 경전에 부합하니 빼거나 더하자고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옛 제도에 의하면 11실, 23칸, 11가입니다. 담과 벽의 너비와 깊이, 당실의 깊이, 기단의 등급 차이 그리고 건물의 높이 차이의 제도는 옛사람들이 이르기 어렵게 할 수 없다 하였으니 검소히 하여 규정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당서』는 오대십국 시기 후진(後晉)의 학자인 유후(劉昫) 등이 집필하였고, 『신당서』는 그 후 송나라의 구양수(歐陽修) 등이 집필하였다. 두 사서를 비교해 보면 『신당서』의 상당부분이 『구당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세세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 부분을 보면 『구당서』의 내용을 『신당서』에서 요약하는 과정에서 “칸(間)”이 “영(楹)”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다. 첫째, 『신당서』의 편집자들이 1칸이 곧 1영이라고 본 것이다. 즉 두 책 모두 고대 종묘의 너비가 23칸이라고 본 것이다. 둘째, 『신당서』의 저자들이 『구당서』의 “23칸”을 “23영”의 오기라고 본 것이다. 즉 1영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기둥열을 가리키는 것이고 때문에 고대 종묘의 너비는 22칸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명대 『패편』의 해석과 일치한다. 또한 “량(梁)”이 “가(架)”로 바뀌었는데 송대 『영조법식』에 의하면 건물 종단면에 도

16) 『中國建築史論叢刊』(청화대학 출판사 2011.4)14~15쪽에 기재된 傅喜年의 「重印陶湘仿宋刻本營造法式序」에 의하면, 『영조법식』은 북송 말에 완성이 되었으며 남송시기에 두 차례 추가 인쇄 되었다. 후에 이들은 명나라 황실과 개인 소장가들의 손에 들어갔으나 오늘날 진정된 송대 판본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다. 적어도 명대 초기까지는 송대 판본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

17) 1919년 발견된 정본(丁本)을 기초로 다른 판본들을 참고하여 1925년 완성된 판본이다. 고증작업을 주도한 도상(陶湘)의 성을 따서 도본(陶本)이라 부른다. 정본의 결손 부분을 보충하였고 기타 문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영조법식』에 관한 내용을 책 말미 부록에 담았으며 송대 인쇄물들의 풍격을 복원하여 인쇄하였다.

18) 도상이 복원 정리한 『영조법식』의 원본은 총 34권이고 뒤에 2권의 부록을 추가하였다.

19) 『구당서(舊唐書)』 165권, 열전 제115, 「은유, 우, 영손전(殷侑, 羽, 盈孫傳)」

리가 11개라는 뜻으로 두 책의 내용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 단, 이렇게 기존의 사서를 재판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글자의 변화는 후인들의 고대 중요건축제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패편』의 “목경 심괄”부분은 송대 심괄이 엮은 『몽계필담(夢溪筆談)』의 “기예(技藝)”편에 기록된 『목경』 관련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발췌한 것이다. 해당 원문은 아래와 같다. []로 표시한 부분은 주해이다.

營舍之法，謂之「木經」，或雲喻皓所撰。凡屋有三分：自梁以上爲上分，地以上爲中分，階爲下分。凡梁長幾何，則配極幾何，以爲檼等。如梁長八尺，配極三尺五寸，則廳堂法也，此謂之上分。楹若干尺，則配堂基若干尺，以爲檼等。若楹一丈一尺，則階基四尺五寸之類，以至承拱，檼檼，皆有定法，謂之中分。階級有峻，平，慢三等，宮中則以禦輦爲法：凡自下而登，前竿垂盡臂，後竿展盡臂，爲峻道[荷輦十二人：前二人曰前竿，次二人曰前條，又次曰前脅；後二人曰後脅，又後曰後條，末後曰後竿。輦前隊長一人，曰傳倡；後一人，曰報賽]。前竿平肘，後竿平肩，爲慢道。前竿垂手，後竿平肩，爲平道。此之爲下分。其書三卷。近歲土木之工，益爲嚴善，舊「木經」多不用，未有人重爲之，亦良工之一業也。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패편』의 “목경 심괄”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패편』이 『몽계필담』의 내용을 주해를 제외하고 그대로 발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 이때 제목에서 『목경』이라는 서명 뒤에 저자의 이름으로 유희가 아닌 『몽계필담』의 저자 심괄을 써넣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이를 본 이규경은 『목경』의 저자는 심괄인데 세간에는 장인 유희가 지었다는 설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참고로 『목경』은 중국에서도 일찍이 실전되어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몽계필담』에 소개된 부분을 근거로 부분적인 특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첫째, 분량이 총 3권인데 이는 『영조법식』 34권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한정된 분량과 『목경』이라는 제목에서 추측컨대 이 책은 건축의 목작만을 다뤘을 것이다. 둘째, 건물을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 몇몇 핵심치수를 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목경』이 대목작 위주의 건축설계 이론을 포함하고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두공과 서까래가 모두 정해진 법이 있다”라는 구절에서 추측컨대 『목경』은 두공과 서까래 등 각 종 목부재의 세부작법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다. 넷째, 구양수(1007~1073)가 쓴 『귀전록』 20

에는 “오늘날 세간에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집필 연대가 대략 1086년에서 1093년 사이로 추정되는 심괄의 『몽계필담』에서는 “옛 『목경』은 쓰임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지 않지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희의 활동 년대가 대략 서기 9백년 중후반임을 고려할 때 『목경』은 백여년이 지나서는 점차 잊히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혹자는 1103년에 공포된 『영조법식』이 당시 유전되던 『목경』을 참고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규경이 건축에 대한 글을 하필 제사제도의 항목에 첨부한 까닭은 제사 건축의 제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본문에 언급한 『고공기 도주』의 「종묘도설」은 바로 춘추전국시대 혹은 그 이전의 종묘의 건축평면에 대한 고증으로 이 글이 속한 “사전(祀典)”의 항목에 부합한다. 둘째, 『패편』에 수록된 『영조법식』의 내용은 건물의 너비를 셈하는 단위로 쓰이는 “영(楹)”의 기원에 대한 고증인데, 이 과정 중에 옛 중요건축의 평면형식에 대한 고증이 언급된다. 다만 문장이 조리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러 관련 고서를 두서없이 나열한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보아 미완성 상태의 초고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이규경이 의도한 주제 외에 건축과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발견된다. 첫째, 이 글은 『영조법식』이 조선후기까지 한반도에 유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을 보여 준다. 『영조법식』은 북송 말인 1103년에 초판이 출판되었으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남송 시기에 이르러 두 차례 정도의 추가 인쇄를 하였으며 이들은 명나라 초기까지 일부 소장가들의 손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책의 이름과 간단한 서지정보만이 몇몇 문집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을 뿐이다. 명말 청초의 상황을 살펴보면 소장가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완전한 판본을 소유했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며 자신이 소유한 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거금을 주고 다른 판본을 빌려 초사작업을 했을 정도이다.²¹⁾ 이렇듯 중국 내에서도 『영조법식』은 상당히 희귀한 서적으로 『사고전서』에 수록된 것을 제외하고 1925년 도본 이전까지는 재출판된 적이 없다. 이 정도의 희귀본이 바다 건너 고려 혹은 조선에 전해졌을 확률은 매우 낮으며 이는 규장각 검서들 지낸 조부와 부친을 둔 이규경 역시 몇몇 중국의 문집을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출처는 송나라 구양수가 쓴 『귀전록(歸田錄)』이다.

21) 『영조법식』의 판본에 대해서 傅喜年, 「重印陶湘仿宋刻本營造法式序」, 『中國建築史論叢刊』(清華大學出版社, 2011), 14-15쪽을 참고하였다.

20) 「궁실제도 변증설」목에서 청나라 방이지(方以智)가 집필한 『물리소식(物理小識)』이라는 과학기술 서적에 송대 장인 유희의

통해 『영조법식』의 존재를 알았으나 그 책을 직접 구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조 때 청나라에서 구입한 『고공도서집성』에는 『영조법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후에 『사고전서』에 포함되었으나 『사고전서』는 조선에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들로서는 『영조법식』을 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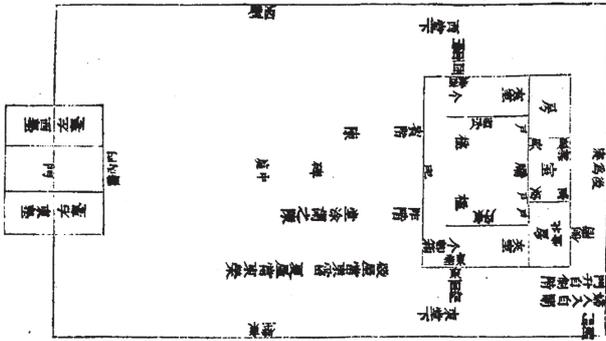


Fig.1 The prototype layout of the ancestral ritual architecture (宗廟圖說) in 『Gogonggi Toju(考工記圖注)』

둘째, 이 글은 고문헌에서 건축의 정면 너비를 나타내는 단위로 자주 등장하는 “영(楹)”의 뜻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영(楹)”은 춘추전국 시대의 문헌에 건물에 대한 묘사에서 몇 번 등장하는 글자로 『예기』에는 “은나라 사람은 시신을 두 영 사이에 두니 곧 주인과 빈객이 이를 사이에 둔다(殷人殯於兩楹之間, 則與賓主夾之也)”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영(楹)은 묘(廟)에서 벽체와 떨어져 있는 작은 앞 기둥을 가리킨다. 그 후 영은 점차 건물의 기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 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당나라 왕영손의 고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고문헌에서 영은 통상 정면 기둥의 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면에서 보이는 칸의 수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고문을 참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4.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오주연문장전산고·인사편·치도류·사전』의 건축 관련부분에 관하여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은 크게 3문단으로 구성된다. 1문단은 영조이론서적으로 『고공기』, 『영조법식』, 『목경』이 있음을 밝히고, 그 중 『고공기』에 대해서 청나라 대진이 『고공기 도주』라는 상세한 고증연구를 하였음을 밝혔다. 2문단은 『인수옥서영』을 인용하여 『영조법식』에 대해 소개 하였고, 3문단은 『패편』을 인용하여

『영조법식』과 『목경』을 소개하였다.

제사 제도를 주제로 하는 「사전」목에서 영조이론서적들을 언급한 까닭은 이들 가운데 고대 종묘제도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공기 도주』는 종묘건축 평면을 고증하였고, 『영조법식』에는 종묘건축의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인 “영(楹)”에 대한 해설이 있다. 반면에 종묘건축에 대한 언급이 없는 『목경』의 경우는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쳤다.

인용문을 살펴보면, 이 글은 『인수옥서영』과 『패편』을 인용하였는데, 그 중 『패편』은 원래 『신당서』와 『몽계필담』을 인용한 것이고, 『신당서』는 다시 『구당서』를 요약한 것이다. 특히 당나라 왕영손이 종묘건축에 대해 설명하는 고사는 『구당서』→『신당서』→『패편』→『오주연문장전산고』의 순으로 반복 인용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글자인 “영(楹)”과 그 밖의 내용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분석과정에서 실진된 『목경』의 대략적인 모습을 유추해 보았고, 『영조법식』이 조선시대 후기까지 조선에 유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을 증명하였다.

References

1. Lee, Gyu-gyeng(李圭景), 『Ohju Yenmun Jangjeon Sango(五洲衍文長箋散稿)』, based on the web site of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 Liu, Xun(劉昫), 『Old TangShu(舊唐書)』, based on Wenyange Sikuquanshu digital edition
3. Ou, Yang-Xiu(歐陽修), Song, Qi(宋祁), 『New Tangshu(新唐書)』, based on Wenyange Sikuquanshu digital edition
4. Tang, Shun-zhi(唐順之), 『Paibian(稗編)』, based on Wenyange Sikuquanshu digital edition
5. Lee, Jie(李誠), 『Yingzaofashi(營造法式)』, China Bookstore(中國書店), 2006
6. Zhou, Liang-gong(周亮工), 『Yinshuyushuying(因樹屋書影)』, Shanghai publisher for classics(上海古籍出版社), 1981
7. Dai, Chen(戴震), 『Kaogongjituzhu(考工記圖注)』, 『Daichen pandect(戴震全書)』, vol5, (Yellow Mountain Publisher(黃山書社), 1995

접수(2012. 10. 15)

게재확정(2012. 12. 13)